

장애인자립세대 및 아동양육세대

특화형 주택 『여기家』 입주자 모집공고(3차)

“여기家”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입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되었으며, 아이들을 키우는 입주자들이 서로 공동육아를 하거나, 입주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공간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임대 및 운영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주택입니다.

모집단위	장애인가구	[공급호수] 7호
	아동양육가구	[공급호수] 4호

-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공고 게시일(2026.5.13.)** 기준으로 하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신청자격-장애인가구)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구성원이 모두 전입할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신청자격-아동양육가구 및 1인가구)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확인)
- (모집인원) 공급주택의 **3배수(당첨자+예비자2배수)**를 모집합니다.(계약포기·해약세대 발생 등을 감안)
- (중복신청 불가) 동일 기간 내 진행되는 **여기家 모집 공고 중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의무)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신청 전 아래 유의사항 확인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유형에 따른 장애인가구(휠체어이용자 가산점 부여), 아동양육가구(미성년아동을 포함한 가구단위, 한부모가산점 부여), 1인가구(1인, 중장년가산점 부여) 거주공간입니다. (공간쉐어, 동거, 전대 등 불가)
 - 사업자등록은 불가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임대료 및 공통관리비와 별도로 개별관리비(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가 청구되며 비용 부과 방식 및 운영규정 등 상세내용은 추후 임대차 계약 시 개별 안내하며, 자체운영규정은 여기가 홈페이지(thehome.freewel.org)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운영기관(프리웰) 및 입주자간 전환보증금은 입주자 보증금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입주자 최초보증금 납부는 보증금 전용계좌 또는 LH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좌안내는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1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5.13.

신청접수	⇒	입주자격 서류심사	⇒	자격검증 (자산/소득심사)	⇒	입주자격 면접심사	⇒	예비입주자 결과발표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교육	⇒	계약체결	⇒	입주
2026.5.13. ~ 2026.5.22. (우편접수만 가능)		2026.5.27. ~ 2026.5.28.		2026.5.29 ~ (약 1~2개월 소요예정)		2026.6.2. (시간 개별통지/ 온라인가능/ 필참)		2026.6.4.		2026.7월 중		2026.6.8. ~ 2026.6.9. (자격검증 부적격시 계약취소)		계약 후부터 '26.7월말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기 등 추후 개별 안내 드립니다.
- * 주택열람은 2026년 5월 19일(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전 전화예약 필수)
- * 입주자격 심사는 서류 및 면접심사로 진행합니다. 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시간은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 계약 체결 전, 예비입주자의 원활한 입주를 돕기 위한 사전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 * 금회 모집공고는 입주자의 신속한 입주를 위해 당첨자 발표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先)계약 후(後)검증 방식으로 진행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장애인 세대의 경우 시설토소 및 사회서비스 신청·결정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이후 최대 2026년 12월 31일 이내 입주 가능합니다.

[선계약 후검증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 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 자격검증과 이에 따른 입주 시기는 정부의 전산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으며, 자격검증 적격 안내 후 잔금 완납 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2 공급주택 : 여기家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90, 488-3, 487]

■ 주택개요

구분	1동 (490번지)	2동 (488-3번지)	3동 (487번지)
대지면적	1,456.00m ²	824.00m ²	341.00m ²
연면적/건축면적	1,200.51m ² / 291.07m ²	693.08m ² / 164.58m ²	271.74m ² / 67.93m ²
용적률/건폐율	79.96%/ 19.99%	79.89%/ 19.97%	79.68%/ 19.92%
주택호수	12호	8호	8호
주차대수	9대	9대	6대
소재지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90, 488-3, 487 (김포골드라인 구래역과 1.9km 내 위치)		

※ [여기家] 주택소개 및 자세한 정보는 여기家 홈페이지(thehome.freewel.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동별 공간구성

1동 : 장애인 8세대, 아동양육가구 4세대					2동 : 장애인 5세대, 아동양육가구 3세대			3동 : 1인가구 8세대		
4층					4층			4층		
3층					3층			3층		
2층					2층			2층		
1층	주민공동이용시설				1층			1층		

■ 주택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 기본 시설 :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천장형 에어컨, 싱크대, 신발장, 스프링클러(1인가구제외) 등
- 부대시설 : 공용카페, 실내운동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공용세탁실, 지원사무실 등

■ 임대조건

동	호	모집유형	면적(m ²)			층수	방수	임대조건(원)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보증금	임대료(월)
1동	201	장애인	59.9560	12.7850	72.7410	2층	2	7,930,000	562,220
	204	장애인	59.9560	12.7850	72.7410	2층	2	7,930,000	562,220
	301	장애인	59.9560	12.7850	72.7410	3층	2	7,930,000	562,220
	302	아동양육	60.0000	12.7940	72.7940	3층	2	7,930,000	562,710
	303	아동양육	60.0000	12.7940	72.7940	3층	2	7,930,000	562,710
	401	장애인	59.9560	12.7850	72.7410	4층	2	7,930,000	562,220
	402	아동양육	60.0000	12.7940	72.7940	4층	2	7,930,000	562,710
	403	아동양육	60.0000	12.7940	72.7940	4층	2	7,930,000	562,710
	404	장애인	59.9560	12.7850	72.7410	4층	2	7,930,000	562,220
2동	102	장애인	69.5500	12.9890	82.5390	1층	2	9,031,000	616,690
	301	장애인	69.1300	12.9110	82.0410	3층	2	9,031,000	626,710

※ 타입, 동, 층 구분 없이 모집유형별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우선 선택권 부여 방식으로 배정

※ 입주자격은 신청유형(신청유형 세부기준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자격요건 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모집인원 수는 계약포기·해약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모집호수의 3배수(당첨자+예비자2배수)를 예비 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호실별 주택 평면도 및 안내

※ 홈페이지 참조 : thehome.freewel.org

■ 주택내부(전용공간)



1동 장애인세대



1동 아동양육세대



2동 장애인세대

■ 주택외부



건물전경

■ 공용공간



마당



공유카페



실내운동실



지원사무실



1동 옥상



공용 세탁실

3

입주자격

-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장애인 1인 가구는 본인의 무주택 여부만 확인) 으로서, 입주자 모집유형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상자	자격요건
① 장애인(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자 □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 및 계획이 있으며 자립생활 유지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성인 장애인
② 아동양육가구(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미성년 자녀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소득 및 자산기준(입주자 공통)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120%
2인	6,024,703원 이하	110%
3인	7,626,973원 이하	100%
4인	8,578,088원 이하	100%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0%, 2인인 경우에는 10% 소득기준 가산하여 적용

- (자산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	1인	0인	120%	337,000,000원	45,630,000원
	2인	0인	11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20%	371,000,000원	50,20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50,20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54,760,000원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출산자녀 1인 10% 소득·자산기준 가산 적용하되,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임(소득 및 자산가액은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가액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4-1 입주자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 심사, 가점항목 등을 합산하여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선정하 되,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점수 10점 이하는 선정 불가

○ 평가 항목 및 배점 : 100점 (활동계획서 20점, 면접 20점, 가점 60점)

평가항목 및 배점		배 점	합 계
활동계획서 평가		활동계획서의 취지,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	20
면접 심사 평가		여기가 주택입주자간의 이해·소통·협력심 등을 심사	20
가점	공통	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 차상위 계층	30
		공고일 기준 김포시 거주자	10
	장애인가구	중증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 장애인*	20
	아동양육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0
			100

* 장애인등록증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으로 표기된 장애인으로 "휠체어 이용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료 기관 진단서 혹은 소견서, 보조기기 급여지급 결정통보서 등)"를 별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인정

**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 소속단체의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평가 방법

- 활동계획서 심사 및 면접 심사는 프리wel 2인, 특화형주택 외부전문가 1인, LH 1인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를 통해 심사, 동점자 발생 시 활동계획서와 면접심사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활동계획서와 면접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4-2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안내된 일정은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신청은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방문접수 불가)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1길 24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 공급일정

절차	일정	내용	비고
모집공고	2026.5.13	프리웰홈페이지(thehome.freewel.org)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프리웰 홈페이지 및 LH청약플러스
신청접수	2026.5.20.~ 2026.5.22.	신청서류 접수 (2026년 5월 22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 준수
1차 입주자격심사 (서류심사)	2026.5.27.~ 2026.5.28.	서류 검토 (필수서류 미제출시 미선정)	
2차 입주자격심사 (면접심사)	2026.6.2.	개별 인터뷰 (시간 개별 통보/온라인 가능/필수)	개별안내
자격검증 (무주택,소득,자산)	2026.5.28.~ (약 2개월 소요 예정)	신청서류 접수자 자격 검증 (자격검증 부적합시 계약 취소)	사회보장정보시스 템 조회
예비 입주자 결과발표 (계약안내)	2026.6.4.	3배수 모집(당첨자+예비자2배수)	프리웰 홈페이지 개별안내
예비 입주자 교육 (필수)	2026.7월 중	입주 후 생활안내 등	개별안내
계약체결	2026.6.8.~ 2026.6.9.	계약서 작성, 계약금 납부 (임대보증금 10%)	개별안내
입주	계약 후 ~ 2026.7월말 예정	잔금납부 (임대보증금 90%)	개별안내

■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	비고
우편접수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1길 24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 신청접수 기간 내 '프리웰' 주소로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 접수 완료로 간주 ※ 우편 소인분(2026.5.22.)까지 유효

- **공고일(2026.5.13)**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입주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전원 작성 (양식첨부) 	
활동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전원 작성 (양식첨부)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이 있는자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자격·가점 증빙 (해당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증명서, 휠체어 이용 여부 증빙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 혹은 소견서, 보조기기 급여지급 결정통보서 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주거)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및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활동가 경력 증명서(소속단체의 재직증명 혹은 경력증명) 	소속단체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현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자격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는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 임대인(운영기관)에게 대출가능 상품(별도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프리웰) 및 입주자간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은 입주자 보증금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입주 및 퇴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보증금잔금은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완료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입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공통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가스 개별 납부, 수도는 관리비로 납부)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 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메일 및 전화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자는 주택 및 공용공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단, 동, 호를 개인이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임대모집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운영기관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인 50만 원을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하며,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자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1319호, 2024.3.25,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주택별, 계층별 해당 호실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후 임대관리(계약, 수납, 재공급, 재계약 등) 업무는 주택 운영사가 위탁받아 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규모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구분	유의사항
	<p>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p>자체운영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위 주택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으며, 개인 적치물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 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에서 층간, 벽간 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운영관리업체가 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운영관리업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는 깨끗하고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운영관리업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p>문의사항</p>	<p>운영기관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1길 24 운영기관 연락처 : free-wel@hanmail.net (02-2648-2252, 유선전화는 평일 10-17시까지) 운영기관 홈페이지 : https://thehome.freewel.org</p>
-------------	--

2026. 5. 13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이 모두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p>
총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p>기타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구분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하 작성 및 제출 서류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구성원 모두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할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_____ (인)

2026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家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내가 관심있거나 경험 있는, 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복수 가능)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기 위한 아이디어, 생활 매너, 규칙 등을 제안해주세요.

그 밖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